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35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양부남 · 김영환 · 민병덕
민형배 · 박균택 · 서삼석
안도걸 · 이광희 · 전진숙
정진욱 · 조인철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면 이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발행량이 많아질수록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커짐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예산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을 설치토록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정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사 지원
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지원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투자 및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이 수입과 지출
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
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
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
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6조의4(기금 계정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
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
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 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 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	법률 제21030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등)

<삭 제>

<삭 제>

③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
연금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등
-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비
용 지원
 2.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금 정산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실태조
사 지원
 4.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 지원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에 대한 원리금 상환

<신 설>

6.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16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투자 및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

<신 설>

<신 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 2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6조의4(기금 계정의 설치) 행

<u><신 설></u>	<u>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u> <u>제16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u> <u>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u>
--------------------	---